
코로나-19 예방·방역 관련 전세버스 분야 대응 매뉴얼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목 차



I. 평상시 : 운수종사자 및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1
<input type="checkbox"/> 운수종사자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	1
<input type="checkbox"/> 방역 관련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 실시	2
<input type="checkbox"/> 전세버스 차량 방역관리	2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소독방역 및 방역물품 구비	3
II. 확진자 발생시 : 매뉴얼에 따른 신속 대응	4
<input type="checkbox"/> 의심(의사)환자 발생시 조치	4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5
<input type="checkbox"/> 확진자 탑승 확인시	7

코로나-19 예방·방역 관련 전세버스 분야 대응 메뉴얼

1 평상시 : 운수종사자 및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 운수종사자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

○ 운수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실내, 실외 불문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생활화
 -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밀착 착용
 - ▶ 손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자주 만지지 않을 것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개인 찻잔, 차 스푼, 물컵, 수건 등 개인별 물품 사용하기

○ 운수종사자 감염예방 기본수칙 준수

- 휴게실 내에 여럿이 함께 모이거나 단체로 집합하는 행위 금지
- 혼잡을 피해 시차를 두고 식사하기, 식사시 대화 및 마주보고 앉기 자제
-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고령자(65세 이상), 고위험군(기저질환자 등)과 대화·식사 등 접촉 자제

■ 고위험군 대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산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고객이나 직원 사이에 2m 이상(최소 1m) 간격 유지하기
- 사무실 및 작업장 등 자주 환기하고, 가능한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열기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방역 관련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 실시

○ 운수종사자 체계적 관리

- 근무 전 모든 운전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시 즉각 승무 배제
- 방역 담당 관리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비상시 신속 대응태세 유지
- 보건소 관계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업무 협력 및 보고체계 구축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로 근로자 증상 여부 확인하기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 병가 등)
- 국내·외 출장은 되도록 줄이고, 직접 대면 방식의 공식회의 자제

○ 운수종사자 대상 방역교육

- 개인 위생관리 방안, 방역수칙 준수 등 직원교육 또는 안내문 게시
 - ▶ 집중교육 대상 : 손 씻기, 상시 마스크 착용, 생활수칙, 건강관리, 소독·방역방법 등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방법과 보고·연락 체계 유지 등 자체교육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영상을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등 예방 철저
-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제작·배포

□ 전세버스 차량 방역관리

○ 운행 전 예방수칙

- 모든 승객에게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예방수칙 상세 안내
 - ▶ 마스크 착용, 옆 사람과 대화 자제, 이격거리 유지 등 직접 안내
- 버스 운행 전 버스 손잡이, 바닥, 좌석 시트, 차량 운전대 등 수시 소독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버스 운전자의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장소(운전석 옆)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승하차 승객에게 가급적 육성인사 등 배제(목례 등으로 대체)

○ 운행 중 예방수칙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를 하고,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 유도
- 차량 운행 중에는 되도록 대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
- 휴게소 정차 등 차량 밖을 나갈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착석하고 다른 사람과 최대한 이격거리 유지
-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춤과 노래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 ▶ 운수종사자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80만원) 부과

■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관리

- 대상 : 일회성 행사, 관광, 집회 등 이용자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
- 내용 : 전자출입자 명부(QR 코드)로 명단작성이 가능하되, 수기명부도 허용
 - ※ 수기명부 허용 대상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자 등
- 기간 : 서울시 행정명령 발령기간(한시적 적용)

□ 사업장 소독방역 및 방역물품 구비

○ 소독방역 관련 기본 수칙

- 소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소독 제품별 사용용도 및 용법·용량 등 준수
 - ▶ 소독제 티슈, 알코올(70% 메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락스) 희석액 등
-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소독제 티슈)을 이용하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타인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필요
- 소독 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것
-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방역 누수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 소독제 분사 후 닦아내지 않으면 분사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독효과 약화 유발

○ 사무실, 휴게실 등 주요시설 소독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거나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청소 및 소독
 - ▶ 집중 소독 대상 : 전화기, 출입문 손잡이, 탁자,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
- 사무실 등 출입자 통제를 위해 상시 발열체크 및 출입대장 작성·비치
 - ▶ 출입대장 작성목록 : 성명, 소속, 방문목적, 연락처, 출입시간, 퇴실시간
- 차고지 방역소독은 매일 실시하되, 주차면은 주 2~3회 이상 실시

○ 방역물품 등 선제적 구비

- 청소 및 소독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 충분히 제공
 - ▶ 개인보호구 : 일회용 장갑, 마스크, 종이 타월, 방수복,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
- 사무실 등 사업장 곳곳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 비치
- 방역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량 구비
 - ▶ 필수 방역물품 :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세제, 체온계, 식당 위생 마스크 등

2 확진자 발생시 : 매뉴얼에 따른 신속 대응

□ 의심(의사)환자 발생시 조치

○ 운수종사자 개인 차원 조치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경우 출근 자제하기
- 근무 중 발열, 기침이 나타나면 사업주에 알린 다음 즉시 퇴근하기
- 증상이 의심되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대화 등 접촉 자제 및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
-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목귀하고, 휴식 중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 사업주(운수회사) 차원 조치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자차로 이동)
- 중간 관리자 등이 확진자 발생 인지, 확인시 상급자(상부)에 즉시 구두보고
 -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 국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시설) 방문자, 특정 종교 관련자, 해외여행자 등에 대해 회사 책임 하에 일정 기간 동향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 의심환자 추가 발생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하기
- 검진결과 확정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등 생활·수칙 준수 안내

■ 의심(의사)환자 특징

- 외국을 방문한 후 14일 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 ※ 코로나-19 발생 지역사회 및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시

○ 확진자 신고 및 조치사항 이행

- 확진자 발견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별도의 격리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즉시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1339), 서울시(☎ 120)에 신고
 - ▶ 보건소 등에서 조치사항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 후 지시내용 필히 이행
-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및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

■ 자가 모니터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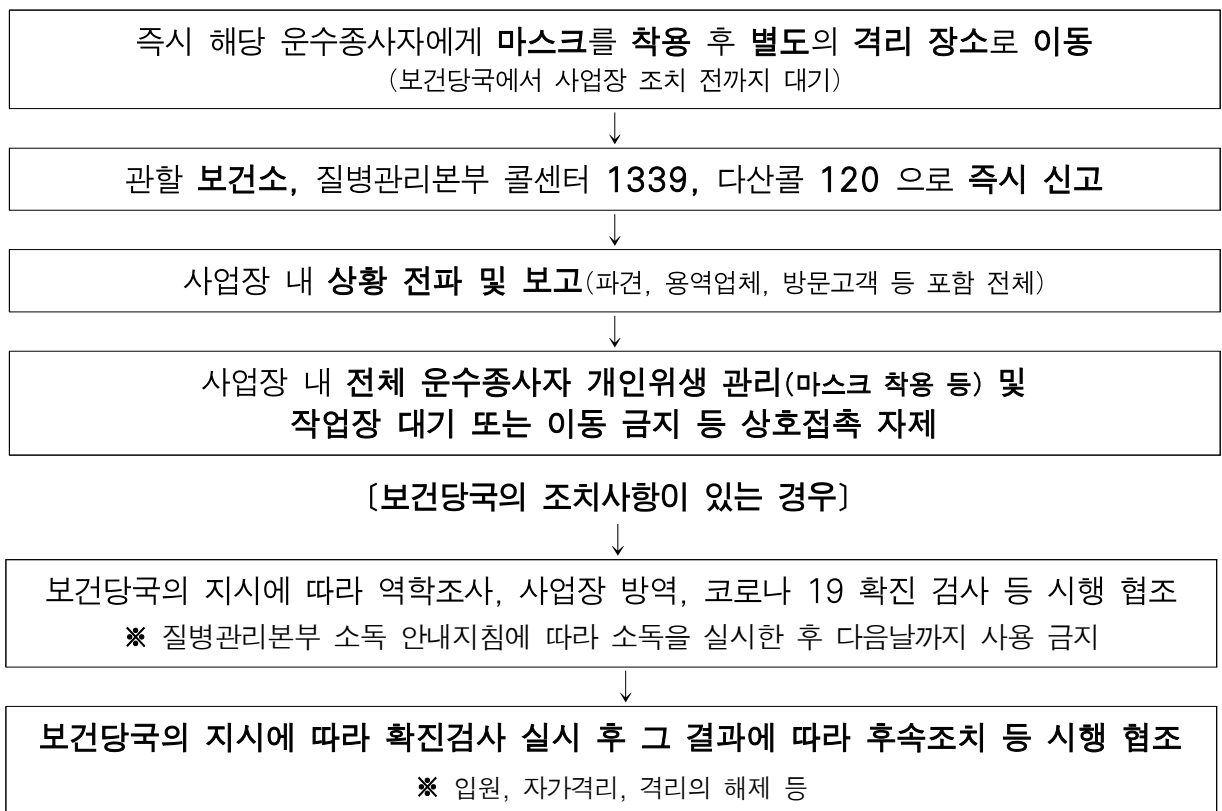
-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재기
- 보건소에 1일 1회 이상 연락 후 감염 증상 및 건강상태 알려주기

- 확진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및 확진환자의 이동동선 파악 등 보건소 및 진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긴급 조치사항

- 즉시 해당 확진자를 다른 장소에 격리하고, 격리 장소 외부에 확진자가 있으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게시
- 확진환자 발생시 즉시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에 통보(다른 영업소 등 포함)
- 확진자 보건소 이송 후에는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 즉시 소독
 - ▶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
- 확진자 발생 장소 및 격리장소에 대해 다음날까지(24시간) 사용 금지
 - ▶ 소독 후 바이러스는 당일 소멸,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등을 고려해 1일 사용금지
- 사업장 내 모든 직원에게 개인위생 철저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 이동 금지 등 상호 접촉 자제, 사업장 내 방역소독 시행 등 지시
-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 코로나 확진검사 등 실시 협조
- 관련 업무 수행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후 근무시간 조정 등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 발생시 행동요령



□ 확진자 탑승 확인시

○ 이송 등 운행 중 조치사항

- 확진자 탑승정보 및 접촉 운전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실을 운수회사,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에 보고하여 신속히 대응
- 운행 중 확진자 발견시 즉시 차량 탑승객을 관할 보건소 등에 이송
- 출발 전이면 확진자는 승무배제하고, 운행 차량 및 운전원 즉시 교체
- 차량 탑승자들도 보건소 기타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
 - ▶ 확진자 탑승차량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하면서 감염 여부 진단 실시

○ 소독 등 운행 후 조치사항

- 해당 차량은 물론 버스사 전체 차량, 사무실, 차고지 등에 대한 소독 실시, 관할 보건소에 2회 이상 소독 요청
- 확진자가 앉은 장소 주변에 강화된 소독 실시, 기타 차량 내외 전반에 방역
- 해당 버스 차량은 소독 방역 후 24시간 운행 중단하고 스케줄 등 조정
-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 관련자 전원 자가격리 실시
- 운전자가 확진자이면 근무복귀 후에도 일정기간 회사 직원과 접촉 최소화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9조3(별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2020.04.05.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9조3(발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권태감
- ☑ 인후통
-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 폐렴

2020.04.05.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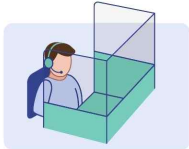


- 전담 조직(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내·전파
- 의심환자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사무실 환경개선



- 노동자간 간격을 최대한 확대하고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 노동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90cm)



- 다중이용공간 일시 이용 제한, 집단행사 및 각종 모임 등 연기 또는 취소

3 근무형태 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점심시간 시차운영



- 연차휴가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인사 등 불이익 금지)

4 위생·청결 관리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 공조기·공기청정기 등 설치 및 주기적 환기(2시간 마다)



- 책상, 의자, 사무기기, 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 소독(1일 1회)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접촉면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소독(1일 1회)
- 사무실, 휴게실, 복도 등 다수 이용 공간 청결 유지, 소독(1일 1회)
*약국 판매 소독용 알콜 등 사용 가능

5 의심증상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 자체 발열(37.5℃ 이상) 모니터링* 실시(출근 시, 1일 2회 이상)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
- 보건당국 지시가 없는 경우 병가, 유급휴가 활용 및 귀가 조치

□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1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다양한 근무방식을 활용해 주세요

유연근무제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 활용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점심시간
시차 운영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2 고용노동부

꼭 필요한 업무이외에 단체 활동은 미뤄주세요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대면 회의시 일정 간격 유지해 마스크 착용

소모임, 동아리, 회식 등 금지

3 고용노동부

직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열 등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주세요

의심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출근시 자체 발열 모니터링
(일일 2회 이상)

발열(37.5°C 이상) 등 열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 즉시 귀가 조치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노동자 요청 또는 불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고용노동부

개인 위생은 철저히 관리하고 구내 식당 이용도 주의하세요

약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구내식당 이용시 마주보지 않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사무실·기기 등을 자주 소독, 매일 2회 이상 환기 등

5 고용노동부

환경개선으로 사무실 밀집을 최소화하고 직원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주세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노동자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은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관장높이 90cm)

고용노동부

힘내라 대구정북 힘내라 대한민족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에 동참해주세요

함께해요

□ 일반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쳐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업현장은 산업용, 일반국민은 보건용, 의료인은 의료용”
용도에 맞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형태



[참고] 보건용 마스크


종류별 용도

- **특급** 석면, 베릴륨 등 발암성 물질 노출 작업
- **1급** 용접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 **2급**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사용지침


1/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분진작업 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배기밸브가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실 때 배기밸브를 통해 바이러스 등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작업 내용, 분진농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방지용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